

# 퇴직연금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

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당	책임자

전산인자란

20 년 월 일

은행 사용란	구분	고객기재 <sup>주1)</sup>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변경없음
	성명(업체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에 등록된	자택주소 (업체주소)	
고객님의 정보입니다.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LGU+
	이메일주소	@
	직장주소	
	직장전화	
	우편물수령처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주1) 퇴직연금 정보 수신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0200)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직연금 거래 고객인 경우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통합되어 관리 되오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구분

제도	<input type="checkbox"/> DB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계좌번호 또는 회사명	DC,기업형IRP의 가입자는 회사명 작성
가입(근로자) 개인부담금 연간 입금한도	원 (타금융기관 연금계좌 포함 연간1,800만원 한도 내 설정가능)		

## 2. 운용지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	운용지시방법	<input type="checkbox"/> 일반상품 <input type="checkbox"/> 포괄운용지시 <sup>주1)</sup> <input type="checkbox"/> 로보어드바이저 추천펀드상품(DB제외)	
□ 계 속 <sup>(주2)</sup>	기업부담금(퇴직금)		개인부담금(DB제도 작성 비대상)	
	상품명	매수비율(%)	상품명	매수비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일 회 <sup>(주2)</sup>	기업부담금(퇴직금)		개인부담금(DB제도 작성 비대상)	
	상품명	매수비율(%)	상품명	매수비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주1) 포괄운용지시란 가입자가 운용방법(상품 만기 등), 운용지시비율을 지정하면 입금 및 만기시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지방은행, 저축은행 정기예금 제외)중 최적금리 상품을 자동매수하는 운용지시 방법입니다. 계속성 운용지시를 포괄운용지시로 선택한 경우 비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일반상품 운용지시와 혼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6개월, 1/2/3/5년제 가능),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00% + 펀드상품 00%

작성불가)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 00저축은행 정기예금 0년제 + 펀드, (포괄) 시중은행 정기예금 0년제 + 00은행 정기예금 0년제

주2) "계속성"은 향후 들어오는 입금액에 대한 운용지시를 말하며, "일회성" 등록 후 최초 입금 건의 운용지시에 한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 3.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전까지 손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쌍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종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익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됩니다(익영업일의 금리 적용).
-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  미동의 ]
- 은행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신 손님께 만기도록 15일전까지 문자메세지(또는 SMS) 또는 E-Mail을 통하여 만기예고를 안내드리오니 발송 매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자메세지(또는 SMS)  수신거부 ]

### 4. 통지서비스 신청

#### 1) 법적통지

법적 통지는 수령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통지순서에 따라 발송되며, 우편물은 자택 또는 직장(DC,기업형IRP는 직장우선)으로 발송됩니다.

통지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기업부담금 미납통지(DC,기업형IRP), 운용현황통지(별도 선택 없는 경우 분기통지), 재정 검증관련 안내(DB제도),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안내, 위험자산 비율이 총적립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운용지시보호조치 안내, 감독규정에 의한 상품매매불능 안내 등
통지순서	① 이메일 → ②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SNS 등) → ③ 우편(단, 가입자교육 최초1회는 우편)

#### 2) 편드 수익률 통지

① 운용수익률 통지 ※ 매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평가액-투자원금)/투자원금×100)로 계산하여 다음 월 통지

- 신청구분 :  등록  해지
- 발송방법 :  이메일  SMS

② 목표수익률 통지 및 자동환매 서비스는 편드 상품 매수 완료 후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을 통하여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기타통지

아래 통지내용에 대한 수령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신청"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발송제외 :  신청  신청안함

통지내용	매수예정상품, 보유상품등록/변경 안내, 부담금 입금 안내, 개인형 IRP의 경우 : 퇴직금 입금 또는 지급안내, 해지 결과 안내, 연금수령신청 사전 안내, 연금수령내역 안내
통지매체	이메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SNS 등), 문자메시지

### 5. 포괄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운용방법에 "포괄운용지시" 체크한 경우 반드시 작성)

- 1) 적립금 입금, 상품(시중은행 정기예금) 만기시마다 은행에서 제공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손님이 요청한 상품운용기간을 반영하여 **최적금리상품으로 매수합니다.**
- 2)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금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나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준수, 상품제공기관의 상품제공 거절, 상품제공기관의 당행 상품제공한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정한 차선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운용지시가 반드시 최고금리상품의 매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보유 중인 만기도록 상품은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액 매도 후 매도 당일 지정된 포괄운용지시상품(매도 당일 최적금리상품)으로 익영업일에 매수되며, **매수일자 기준 고시금리로 적용됩니다.**
- 4) 매도 후 신규 매수된 상품은 기존 상품과 동일할 수 있으며, 매수매도거래에 따라 만기일과 신규매수일까지 2영업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5) 포괄운용지시 등으로 **상품 매도/매수가 진행 중인 경우 지급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포괄운용지시 해제 이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시 최종보유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됩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다음 페이지 계속]



## 6. 상품 가입 고객 확인서

### ■ 예금 등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수령 및 설명에 대한 이해와 투자 확인

- 본인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수령함  수령거절함]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저축은행 정기예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운용가능한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과 복수로 퇴직연금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저축은행별 투자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운용되고 있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만기도록 시 당초 약정된 이자를 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하되 재예치된 금액과 다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원리금비보장상품(수익증권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시간은 익영업일로 순연되어 적용됩니다. (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 1영업일)
-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예금자보호 확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 근로자(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 시 유의사항 확인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집합투자증권) + 퇴직연금(DC, IRP))의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계약금액 / 한도 /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하여 입금예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 수수료에 관한 사항 확인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의거 매년 계약응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 : 적립금 차감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별도납부(단,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적립금에서 차감)

### ■ 일시 지급(해지)시 과세 및 유의사항 확인

-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본인)부담금 및 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과세됩니다.
- 개인형IRP계좌 해지시 납입한 용도(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를 구분하여 일부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연금수령 신청과 동시에 1회에 한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지급신청과 동시에 자금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가능합니다. 손님의 운용상품별, 지급신청 시간대별로 실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매수예정상품등록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계약서 및 약관에 동의하기에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매수예정상품변경 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